

2026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시 2026년 6월 11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현 송 의 장(총재)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김 진 일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사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장 정 수	부총재보
	김 제 현	부총재보	이 지 호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동 렬	조사국장
	임 광 규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조 용 범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유 재 현	국제기획부장	권 도 근	의사팀장
	김 민 규	국제총괄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9호 -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의 만료일이 도래 하였으나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추이 등을 감안, 시행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지난 6월 4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동 제도의 추가 시행 연장 여부는 외환시장 여건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제도 시행 관련 여건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과거 위기 등 일부 사례와 같이 원/달러 현물환율 상승과 함께 외화자금시장 유동성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동 제도 시행이 어려웠겠지만, 현재는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여 제도 시행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장(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장(안) (생략)